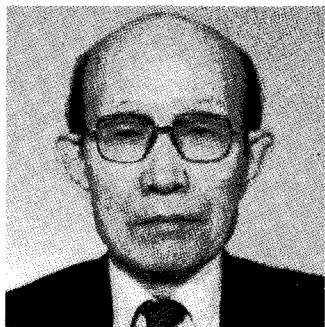


농축산업의 기술혁신과 시험연구기관의 실상평가(實相評價)



황 영구

본회 고문

인류의 생명을 유지하고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는 “에너지”의 생성을 위한 식량을 생산하는 농축산업은 영원한 기간산업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의 실상은 국내적으로는 농공간(農工間)의 인위적인 위상 변화와 국제적으로는 과학기술혁신의 차이에서 오는 생산성의 우열의 문제등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국가의 책임이요 정부의 임무이다.

국토의 경관(景觀)관리와 자연보호, 농토의 경작이 용과 비옥도 향상 및 동물인 가축과 식물인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기초학문의 시험연구사업이 학자 상호간에는 물론이고 농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전공별 학자들에 의하여 연

구활동이 자유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는 학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며 정부는 성실하고 정직한 학자들을 우대하여서 “우루파이 라운드”의 협상 압력의 한시적인 진행과정에 국내대책 강구 등 급변하고 있는 난국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농축산물 시장개방문제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축산 농민을 선도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축산업을 수호하고 식량의 자급도를 높혀야 한다.

그러한 방향의 정도는 국가는 시험연구사업의 발전으로 기술을 혁신하고 농축산인은 실무기술을 터득하여 농토, 작물, 가축을 상대로 자연섭리와 사회 경제변천에 적응하도록 기획하고 관리하는 실무자로서의 삼역(三役)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래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경제정세의 변화등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의 농축산업의 시험 연구 사업은 기구와 업무의 근본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축산업은 우주 천체내의 지구적 시야의 위치에서 농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 성조(聲朝)의 건국이념인 흥익의 인간공존정신으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적인 농축산업의 지속적인 생산력의 향상과 그 생산기능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생태계를 조화 보존하면서 지구적(地球的) 규모의 문제 해결을 통하여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지역풍토의 특성에 입각한 농축산업 발전, 농촌의 활력증진, 지역고유의 자연, 인적자원및 문화등을 고려하여 국제화에 동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유통, 소비를 조직화하여 생산생활, 자연환경

**농축산업이 영원한 기간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사업의 연구활동 자유와
신분을 보장하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학자는
우대하고, 과학기술혁신의 차이에서 오는
생산성의 우열문제등은 정부의 임무와 국가의
책임이다.**

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농촌의 실현과 농축산업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 가축과 작물의 생리기능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공학의 (Biotechnology) 활용으로 가축과 작물의 생태학적 원리와 법칙을 추구하여 생산성의 향상과 질적개량을 도모하는 연구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충실히 효율성을 제고에 필수요건인 연구용 자재, 고정밀도의 분석계측수법(計測手法)과 정보처리방법의 조직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일본이 세계 제2차대전의 패망으로 36년간의 일본군 대장들이 경찰을 선봉으로 농축산물 수탈의 총독식민지 학정을 계속하던 일제가 미국에 항복하고 퇴각한 후 1947년 과정법령(過政法令) 제1600호 농업기술교육령에 의하여 설립한 농사개량원은 미국의 제도와 같이 국립농과대학과 함께 중앙농사시험을 흡수하고 농사교도국(農事教導局)을 신설, 창설하여 농업의 시험연구 기술보급업무를 관장하게 하였고 축산은 성환에 종축장을 창설하였다.

그후 1949년 대통령령 제45호로 농사기술원의 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농사개량원은 폐지되고 농과대학은 문교부에 환원되었고 농사시험장과 교도국을 통합하여 중앙농업기술원으로 개칭, 설치되었다. 1952년 대통령령 제640호에 의한 중앙축산기술원 직제로 중앙농업기술원의 축산과와 경주와 화산지장을 분리하여 충남 성환축산지원에 농림부 직속으로 중앙축산기술원을 신설하고 농업의 시험연구기관과 대등한 축산업의 시험연구기관이 발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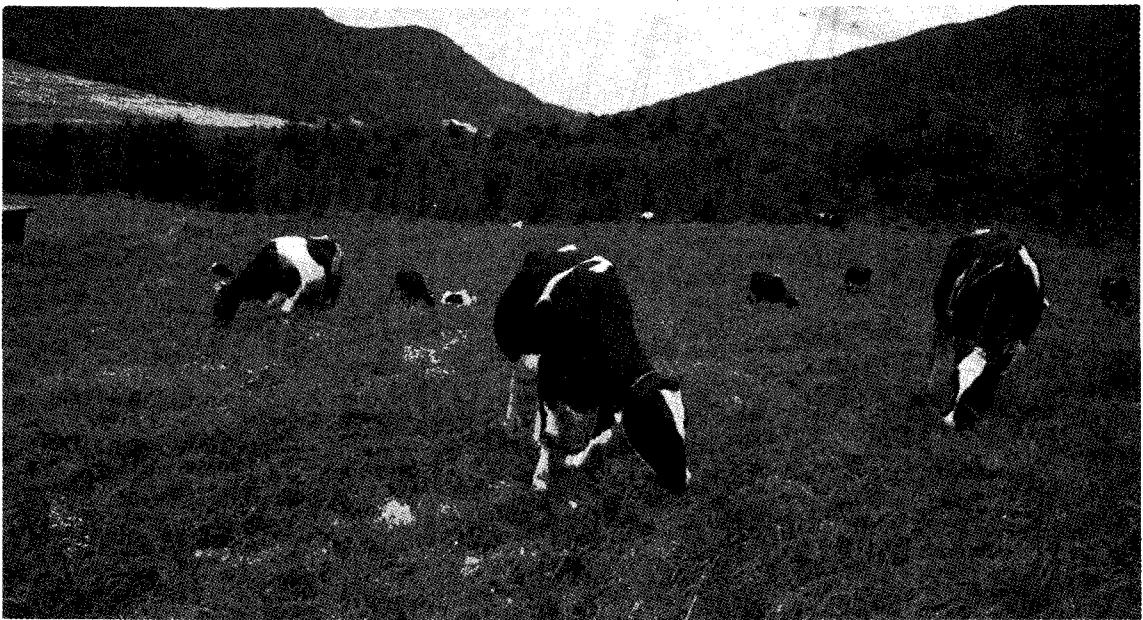
1956년 농림부령 제43호에 의하여 대전, 대관령, 사천, 제주에 4개지장을 축산인의 노력과 총의로 신

설보강하여 중앙축산기술원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여 오던중 1957년 법률 제435호 농사교도법의 공포를 추진한 일부 농업관계 학자들의 편견과 축산관계 공리주의자(功利主義者)들에 의하여 민주주의에 수행하는 농사원을 중앙농업기술원으로 개편하면서 중앙축산기술원의 독립기관을 흡수하여 축산시험장으로 개칭하였고 가축위생연구소도 학문의 특수성과 법적으로 가축의 방역업무를 관장하지도 않는 농사원이 불법으로 흡수하였다.

5.16 혁명후 1961년 법률 제1742호로 농사교도법을 농사연구교도법으로 개정하면서 각 시험장과 연구소를 독립기관에서 농사원의 직속부로 장장과 소장도부장으로 하고 직급도 당시 2급감에서 을로 격하하는 등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오점(汚點)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축산시험장의 대관련지장서 실질적으로 한개의 지장을 축소한 것이다.

1947년 농사개량원 이후 동일한 목적과 사업인 농사의 시험연구와 기술보급업무를 가지고 빈번하게 개폐를 거듭하여 오던 농사원은 1962년 군정하에서 개편한지 불과 5개월만에 법률 제1319호에 의하여 무리하게 원칙도 없이 여러 기관을 흡수 통합하여 농촌진흥청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분별없이 행정기관으로 자처하면서 변신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영문표시의 office도 같은 뜻이기는 하나 1985년에 행정기관이라는 의미를 자인하는 Administration이라고 개칭 공포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농촌진흥청은 각도에 농촌진흥원을 시군에 농촌지도소를 계선조직(系線組織)으로 설치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의 청(廳)이라함은 각부의 사법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정책기관과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전부 분리하여 외청으로 설립할 때 사용하는 한자로서 청(廳)과 서(署)가 같은 의미를 갖는 관서명이다.

이조시대의 포도청이나 현정부의 검찰청, 국세청, 노동청, 동림수산부의 산림청, 수산청 등 그외의 타부의 청(廳)도 동일하며 하부조직으로 경찰서 세무서 영림서 등이 해당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 축산업의 정책기능은 농림수산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제1차 소속기관이며 외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시험연구와 농업기술의 개량보급기관이 청장(廳長)이라면 높은 자리로 오인하고 청(廳)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식의 소치(所致)이다.

각도는 같은 업무를 법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므로 외청(外廳)이라면 당연히 다른 외청과 같은 청(廳)자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廳)자를 배제하고 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농민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과 농촌지도라는 용어의 유래와 의미에 있어서 허구(虛構)요, 독재성향이요, 권위요, 패권주의(霸權主義)라는 것이다.

농촌진흥법 제1조 목적과 농촌진흥청 직제 제1조 직무는 법적으로 시험연구, 농민지도, 기술보급 지도자의 양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목적과 직제는 농업이라는 산업에 대하여 조물주의 창조질서인 자연섭리의 법칙과 원리를 시험하고 연구하여 얻어지는 새로운 과학적인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동일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1947년 농사개량원에서 중앙농업기술원, 농사원 그리고 현재의 농촌진흥청으로 이유없이 개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관업무는 장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근래의 농촌문제는 농촌진흥청 소관외의 농촌과 농민들의 농축산 업무는 농지정리와 보존,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 도로의 개량과 교통, 상하수도시설, 자연보호와 공해, 문화시설, 세제문제, 농축산 기자재의 생산과 공급, 농축산물의 가격, 판매, 유통, 영농

**국내에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기관의 행정이 학문과
기술을 유린해 나간다면
농축산업의 기술혁신의
장애물이 될 것이며 특히
많은 학자들에게 패권주의적
지배로 분노와 배신을 주는
학문적 패륜은 재고되어야
하여 농축산업 기술교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야 할 것.**

자금의 지원, 영농인력과 후계자, 농민의 의료보험과 노후의 사회복지대책, 농외소득원의 개발(농업소득 50%감소) 및 농민의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민주화문제가 농민이 주체가 되어서 균형있게 상호보완 발전 하여야 농촌이 부흥된다는 것이며 농림수산부 각도 시군읍면의 정책적인 보호육성과 행정지원이 수반되어야 농촌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의 업무만을 가지고 농촌진흥과 농촌지도라는 전유기관명(專有機關名)으로 농민에게 군림하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고 특히 농촌진흥청이라는 술이는 일제 침략후 1920년부터 패망되거시까지 우리나라의 농민수탈방법으로 1932년 10월에는 농촌진흥위원회 규정을 악명 높은 字坦一成總督에 의하여 공포 하여 중앙 도 군 면 리까지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7만부락의 218만 농어가를 선정하여 소위 농촌진흥 자력갱생부락이라는 입간판을 부락입구에 건립하였던 사실과 지도라는 용어는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의 지도이념과 김정일지도자라는 독재자들이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술이며 지도관이라는

관직명은 우리나라 정부의 공무원 전체직명중에서 첫째 순위의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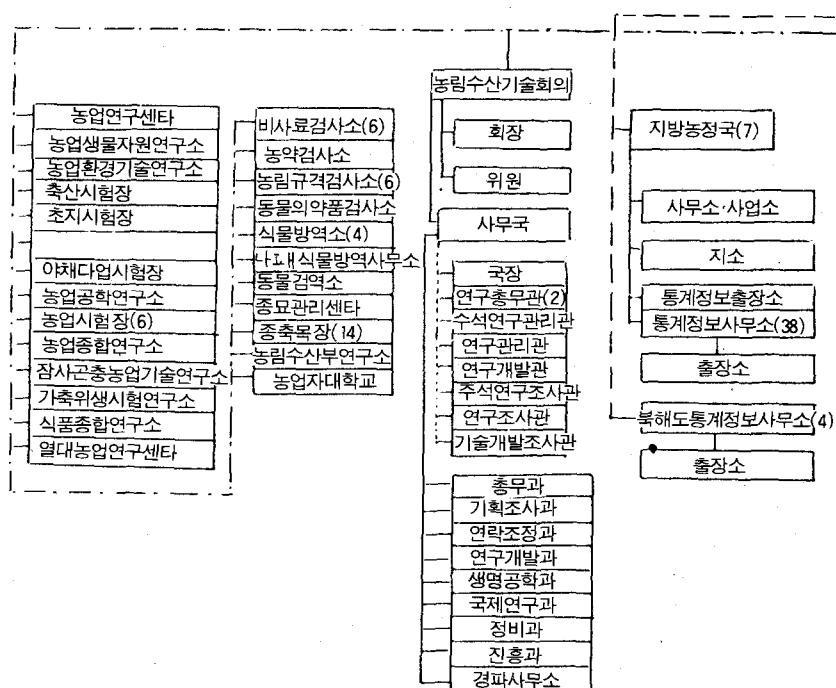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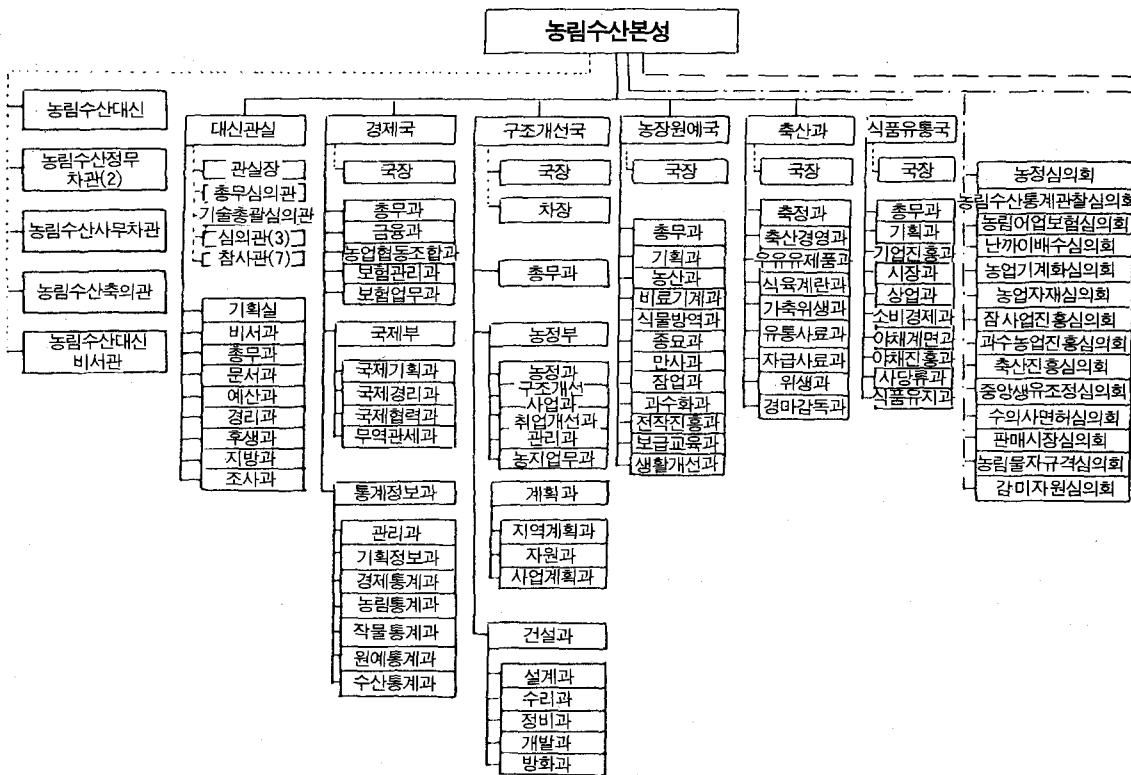
일본은 36년간 농촌진흥이라는 식민지허정(虛政)을 하면서 쌀은 매년 적은 해에는 2~4만석 많은해는 6~9만석을 수탈하였으며 1937년 중일전쟁 발발시에는 10,996천석으로서 당해년도 생산량의 41%를 일본으로 반출하고 우리국민에게는 만주로 부터 잡곡을 들여다가 식량으로 배급하였고 한우는 그 기간에 2,000,000만두 내외와 우파의 막대한 량을 탈취하였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북한정권의 실태를 심찰(審察)해 볼때 양식있는 국민의 한사람이라면 기관의 업무와도 거리가 멀고 적합하지도 않으며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농촌진흥과 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제의 침략과 북한의 적화통일을 바라는 반국가적, 반민주적 정신의 소유자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농축산 시험연구 기관과 농업개량 기술보급소의 기구표를 별첨하고 우리나라의 지도관(指導管)이라는 관직명을 미국에서는 Extension Worker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농업개량 보급원이라고 한다는 것도 참고로 명기하고 정치나 특히 오늘의 농촌진흥청과 같이 행정이 학문과 기술을 유린하면 작물과 가축의 개량은 물론아요 증식과 품질향상의 저해요인으로서 기술혁신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와 패권주의가 봉괴한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일부의 농학자들이 축산과 가축위생학을 패권주의적으로 지배하면서 축산학자를 차장으로 보직하여 여러기관의 농학자들에게 한을 맺히게 하며 학문의 패륜(悖倫)을 자행하는 농촌진흥청은 위에서 논술한바와 같이 모순되고 불합리한 점들을 깊이 검토하여서 일본등 외국과 같이 농축산업 기술교육은 농림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시험연구기관을 본부의 제1차 소속관서로 개편하여 학자와 기술자들의 합리적인 활용과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여 기술혁신의 원동력을 배양(培養)하여야 한다.

일본의 농립수산성 기구표



DEPARTMENT OF AGRICULTURE

